

빈곤여성의 일·가정생활 양립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

이 미 영(立敎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I. 서론

여성(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지속적인 증가는 일·가정생활 양립이라는 사회과제를 낳았다. 게다가,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가정생활 양립지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일·가정생활 양립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법률의 제·개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2007년)으로 전면개정됨으로써, 일·가정생활 양립지원정책을 구체화하였다. 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2007년)이 제정되었고, 여성, 노동과 관련된 법률에서도 일·가정생활 양립지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것 등을 살펴볼 때, 양립지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알 수 있다.

일·가정생활 양립지원(일반남녀¹⁾)뿐만 아니라, 빈곤여성에게도 큰 과제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서구선진국에서는 자립, 자활을 강조하면서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려는 적극적 탈빈곤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 생산적복지, 자립, 자활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빈곤여성의 경우, 돌보아야 할 아동이 있거나 간호·개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원이 있는 모자가정²⁾이나 여성세대주가 많아,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홍경준·이태진 편, 2009). 이처럼 빈곤여성에 대한 일·가정생활 양립지원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이다. 즉, 빈곤여성에게 있어서 자립, 자활정책과 일·가정생활 양립지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가정생활 양립지원에 관한 연구는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빈곤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가정생활 양립지원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생활 양립지원과 관련된 법률 규정내용에 있어서, 빈곤여성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고찰 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대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여기에서 ‘일반’이란 단어를 붙인 이유는, 빈곤여성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표기한 것은, 일·가정생활 양립지원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젠더)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일·가정생활 양립지원이 젠더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빈곤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빈곤’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빈곤문제=여성문제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 최근에는 ‘한부모가족’이라고 지칭하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자가정’이라고 하였다.

II. 빈곤여성에 관한 선행연구로부터 본 일·가정생활 양립지원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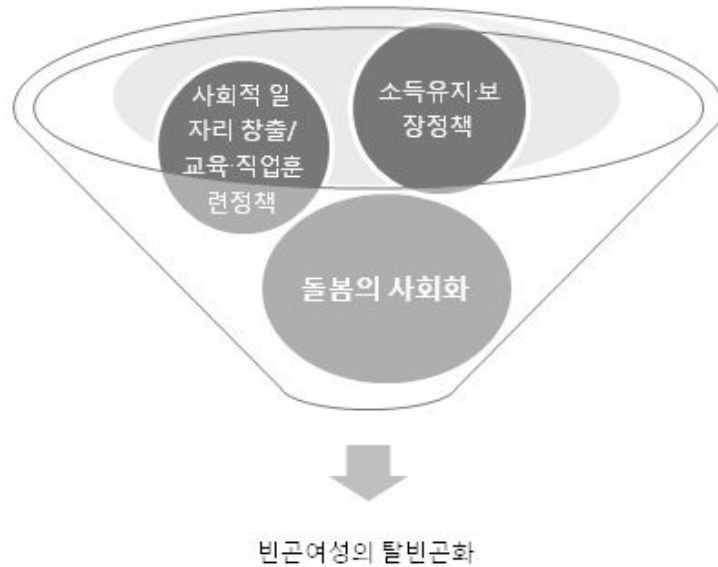
빈곤여성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경제위기, 대량실업,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여성가구주, 모자세대가 증가하기 시작한 1990년대 들어서이다. 이들 연구는 여성가구주,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한 생활실태와 여성 일자리 창출방안, 자립·자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한혜경, 2000; 박경숙, 2001; 강남식, 2005; 김영란, 2006). 본 절에서는 빈곤여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빈곤여성에게 있어 일·가정생활 양립지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빈곤의 여성화’ 현상,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의 문제, 사회보장제도 내에서의 여성배제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문숙(2006)은 탈여성빈곤 정책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포용의 사회복지정책’으로 빈곤수준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 탈여성빈곤을 위한 경제정책은 ‘빈곤여성을 위한 소득유지 정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교육·직업훈련 정책’으로 나누어 추진되어야 하며, 셋째, ‘보살핌의 사회화’로 저소득 가구와 여성가구주를 위한 더 많은 사회보호서비스는 빈곤을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이며, 여성의 탈빈곤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복지의 우위성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사례를 들어 여성빈곤문제를 파악하고 그 구조적 요인을 고찰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고 시도했던 문은영·전경옥(2005)의 연구는 여성한부모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성한부모가구를 위한 장·단기적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육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생계비 보조와 아동수당과 같은 소득지원이 필요하며 이들 자녀의 양육을 지역공동체와 사회가 분담하고 빈곤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적극적인 자립지원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2006)은 소득보장정책, 조세정책, 직업훈련정책 등 종래의 빈곤정책이 여성들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탈빈곤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빈곤을 위한 탈빈곤전략은 여성고용, 보살핌, 일의 질에 대한 개선이 결합되어야만 하며, 특히 보살핌의 사회화(아동보호를 포함한 사회서비스)는 빈곤정책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여성빈곤의 사회적 원인, 여성 근로가구주 가구의 특성 변화에 대해 분석한 심삼용(2006)의 연구에서도 여성 근로빈곤의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 학습복지 추구하고 함께 노동-복지-양육지원을 연계하는 성인지적 여성빈곤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빈곤여성에 대한 탈빈곤정책은 자립정책이나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빈곤여성의 경우, 보호해야 할 아동이 있거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홍경준·이태진 편, 2009.).



<그림 1> 빈곤여성의 탈빈곤화를 위한 구조

이상과 같이 빈곤여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빈곤여성의 탈빈곤정책으로 노동과 복지정책, 돌봄의 사회화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그림 1> 참조), 특히, 일·가정생활양립지원책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Ⅲ. 연구방법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양립, 빈곤, 가족친화 등)로 검색해 본 결과, 본 연구와 관련된 법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밖에 검색되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가 지금까지 모아 둔 법률 가운데, 일·가정생활 양립지원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양립지원과 가장 관련이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빈곤여성과 관련된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기타 관련 법률을 살펴보았다. 이들 법률을 중심으로 일·가정생활 양립지원에 대한 규정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내용이 빈곤여성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찰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V. 관련 법률에서 본 일·가정생활 양립지원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본법은 1987년12월4일 제정(1988년4월1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이 2007년12월2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로 전면개정되었다.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내용이 남녀고용평등법과 결합한 것은, 양립지원책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의 문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법의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가정생활 양립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제3장과 제3장의2에 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제1장 총칙 |
|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
|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
|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
| 제3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
| 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 제3장 모성보호 |
| 제18조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
|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
| 제3장의2 일·가정의 양립 지원 |
| 제19조 육아휴직 |
|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제19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 제19조의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 제19조의5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
| 제19조의6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
| 제20조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 제21조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등 |
| 제21조의2 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
| 제22조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
|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 제22조의3 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

<그림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의 구성

제18조에는 산전후휴가제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9조에는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으로,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외에도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①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②연장근로의 제한, ③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④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 직장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직장보육시설 및 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제21조)에 대한 규정도 있다. 이와 같이, 본법 제19조, 제21조에는 육아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가정생활 양립지원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은 양육자로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발자로서의 돌봄문제도 존재한다. 이를 위하여 본법 제22조에서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교육·육아·주택 등의 공공복지시설의 설치와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①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②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③연장근로의 제한, ④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⑤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 있어서 일·가정생활 양립지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양립지원에 관한 규정내용을 보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입장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본법 제3조(적용범위) 제1항³⁾,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항⁴⁾,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제3항⁵⁾에서도,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일반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빈곤여성에 대한 배려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본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7년 제정되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양립지원문제는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가족친화제도로는 ①탄력적 근무제도: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②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③부양가족 지원제도: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④근로자 지원제도: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⑤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가 있다(제2조). 이들 제도를 중심으로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직장환경을 만들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

-
- 3) 제3조 제1항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제4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5) 제5조 제3항 사업주는 일·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법에서도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환경까지도 주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본법은 1989년 「모자복지법」으로 제정, 모자가정뿐만 아니라 부자가정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었다. 본법에 따른 복지 급여의 내용을 살펴보면(제12조), ①생계비, ②아동교육지원비, ③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④아동양육비, 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우선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가구주 3명 중 1명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김영란, 2006)에서 본다면, 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법 제16조에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시설 우선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지원서비스(제17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①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②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서비스, ③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④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본법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양육에 있어서는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시설의 우선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들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노력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곤란에 처해 있는 한부모가족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4. 기타

본 절에서는 여성·가정과 관련된 법률인 「여성발전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 <표 1>, <표 2>, <표 3>과 같다.

「여성발전기본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의 주된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와 양립지원에 대한 규정이 나타나 있어, 출산과 아동양육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발자로서의 노동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비해,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정, 자녀양육, 가족부양이 나누어져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다른 법률과는 다르게 경제부담의 경감이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법률도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빈곤여성에 대한 배려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여성발전기본법」의 일·가정생활 양립지원 관련 규정내용

| 조 항 | 내 용 |
|-------------------------|---|
| 제18조 (모성보호의 강화) |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23조 (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①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②방과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③육아휴직제의 정착, ④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표 2> 「건강가정기본법」의 일·가정생활 양립지원 관련 규정내용

| 조 항 | 내 용 |
|----------------------|---|
| 제3조(정의) 제4항 |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직장 및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야 하며, 취업여성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 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동공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 제22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후 서비스,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나아가야 한다. |
| 제25조 (가족부양의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가족구성원 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표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일·가정생활 양립지원 관련 규정내용

| 조 항 | 내 용 |
|-----------------------|--|
| 제8조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제9조 (모자보건의 증진 등) |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구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제10조 (경제 부담의 경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V. 결론

일·가정생활 양립지원에 관한 6가지의 법률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법률의 특징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대부분의 법률이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빈곤여성에 대한 배려가 나타나 있었던 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밖에 없었다. 빈곤여성은 일반여성보다 일·가정생활 양립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양립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법률에서 빈곤여성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빈곤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가정생활 양립지원과 관련된 법률제정과 함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규정내용이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탄력적 근로시간제, 직장보육시설 등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빈곤여성의 경우, 일을 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열악한 환경(임시·일용직 등)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높다. 법률상으로는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작업장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 열악한 작업장은 빈곤여성에게 양립지원을 제공할 여력이 부족하므로, 정부가 각 작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야 할 것이다. 또 빈곤여성의 경우, 실업에 처해 있는 빈곤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저학력으로 인해 직업능력이 부족한 여성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가정생활 양립지원책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빈곤여성들과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여성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앞에서 살펴본 법률의 대부분이 양육자로서의 돌봄, 수발자로서의 간호·개호의 사회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가정생활 양립지원이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 규정의 내용이 강제규정이 아니라 노력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기업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을 현실성 있는 법률로 개정하고, 노력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또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벌칙이나 벌금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남식(2005),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빈곤여성가구주를 중심으로」, 『도시와 빈곤』 통권 72호
금재호(2006),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勞働經濟論集』 제29권(1), p.41-73.
김동현(2006), 「근로빈곤층 고용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p.4-13
김영란(2006),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여성빈곤 그리고 탈빈곤정책」, 『한국사회학』 제40집 제2호 p.189-226.
김정혜(2004),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적 안전망」, 『Administration Focus』.
김중숙(2006), 「여성 근로빈곤계층의 특성과 정책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p.14-24.

- 김중숙 · 이선행 · 윤병욱(2006), 『여성근로빈곤계층과 노동시장정책』, 한국여성개발원.
- 노대명 · 최병두 · 조명래 · 류정순(2006), 「새로운 도시빈곤으로서 근로빈곤층의 발생과 대책」, 『한국 지역지리학회지』 제12권 제6호, p.671-692.
- 문은영 · 전경옥(2005), 「일본의 가족, 노동시장, 복지정책을 통해 본 여성빈곤-여성 한부모 가구주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한국세계지역학회 Vol. 23, No. 2 p.31-58.
- 石才恩 · 金龍夏 · 金泰完(2003), 『여성의 빈곤실태 분석과 탈빈곤 정책과제 개발』, 보건복지부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심상용(2006), 「여성'근로'빈곤 증가의 원인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규명」, 『사회 복지정책』 제26집 55-85.
- 이문숙(2006),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 상황과 탈여성빈곤 정책」,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Vol. 29 p.105-135.
- 장지연 · 요코타 노부코(横田信子)(2007), 『글로벌화와 아시아 여성』, 도서출판 한울.
- 허미영(2006), 「빈곤의 여성화: 빈곤의 계기와 가족의 역할-부산, 경남지역 심층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2권 제4호 p.236-262.
- 홍경준 · 이태진 편(2009), 『기초생활보장제도 현장보고서-마지막 사회안전망에서 만난 사람들』, 나남.

빈곤여성의 일·가정생활 양립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

토론자: 조 희 금(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

발표자: 이 미 영

현재 일-가정 양립지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이며, 가족정책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2010년 3월 주관부처를 옮긴 후 여성가족부의 역점추진과제 중 하나도 ‘일-가정양립지원’이다.

발표자는 가족정책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일-가정양립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하겠다. 특히 누구보다 일-가정양립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대상임에도 정책대상에서 특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저소득 빈곤여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 점은 매우 의미 있다. 또 정책이 법률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때, 일-가정양립지원과 관련 있는 법률을 검토하여, 해당되는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은 정책의 근간을 짚어보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법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률이 정규직에 근무하는 여성을 대상(혹은 치소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음을 전제하여)으로 그들의 지원에 관한 것을 주로 다루고 있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발표자는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빈곤한 비정규직 여성, 혹은 직업이 없는 빈곤여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책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해 내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법과 정책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지원대상에 맞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가기 위해 매우 필요한 지적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에서 더 고려했으면 하는 몇 가지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방법에서 단순히 법률의 내용에 일-가정 양립 관련내용이 들어있는지를 검토하는 것 뿐 아니라, 연구방법을 더 자세히 제시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법률검토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발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이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을 고찰하면서 이 법들이 빈곤여성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은 보편성을 가져야 하므로 그 법이 목적하는 바 보편적인 대상을 주된 목표 집단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법률 안에서 특별히 빈곤여성을 위한 조문을 가지기는 어렵다. 대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나 운영지침 등 하위법률에서 이를 다룰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 지원의 강화)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법령에서는 빈곤가정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없으나, 그 운영지침에서 소득수준 별로 차등 지원을 실시함으

로써 빈곤 가정에 우선적인 혜택을 주도록 되어있다.

셋째, 발표자가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안들은 법률 차원에서 다루어지기 보다는 하위법률인 시행규칙이나 운영조례, 혹은 지침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편적인 법률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모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